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신청 매뉴얼



목 차

I	안전인증 제도 안내	1
II	신청 절차 및 서류	2
III	안전인증 대상 제품	8

안전인증 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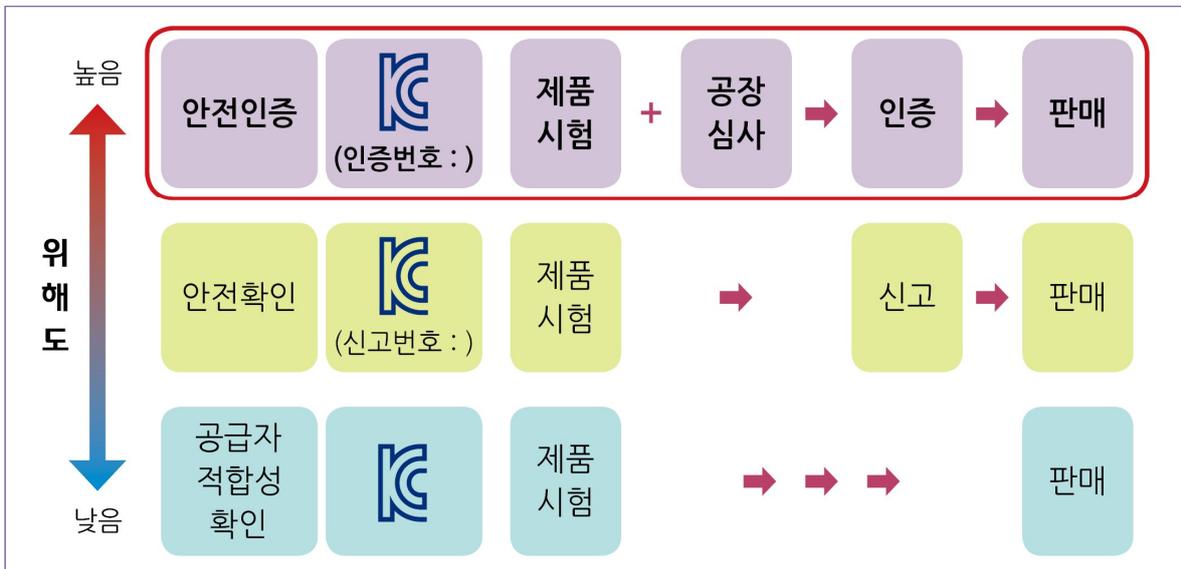
○ 안전인증 제도

국내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이다.

○ 정기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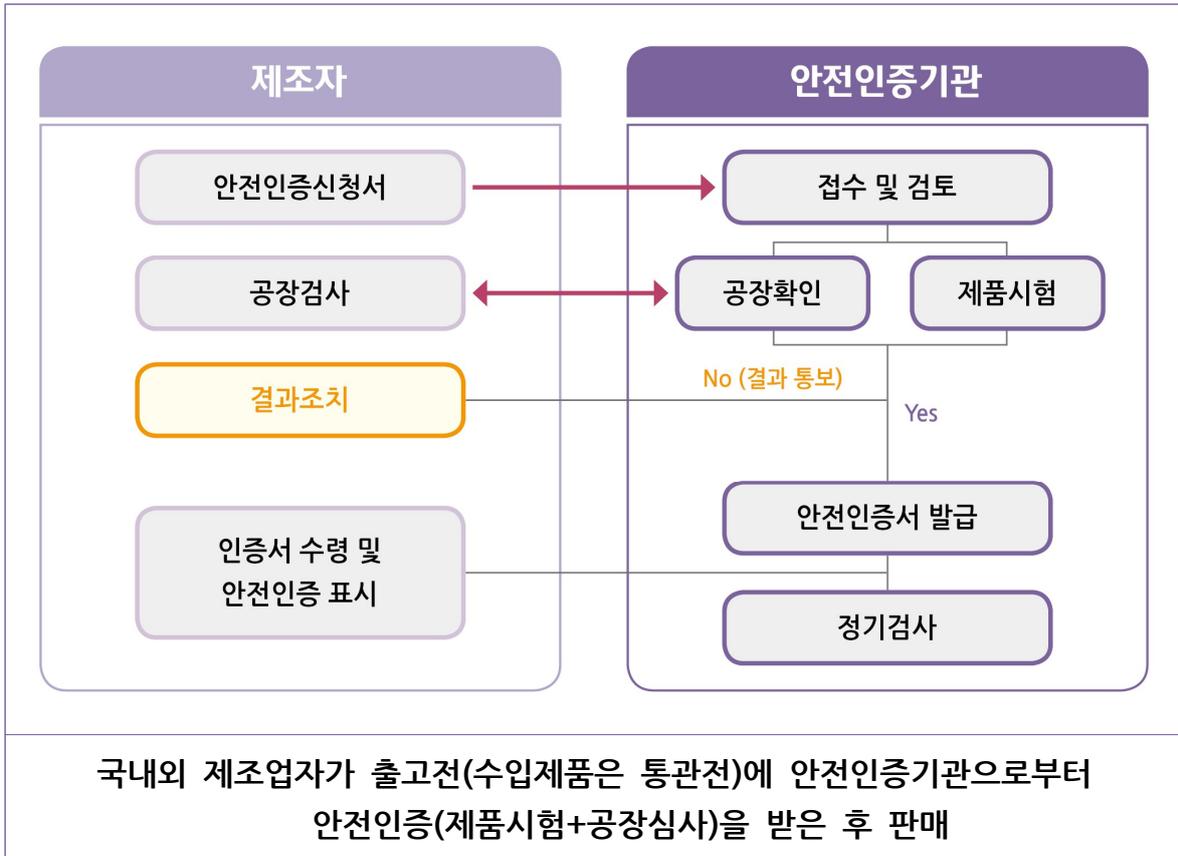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 인증마크 및 적용절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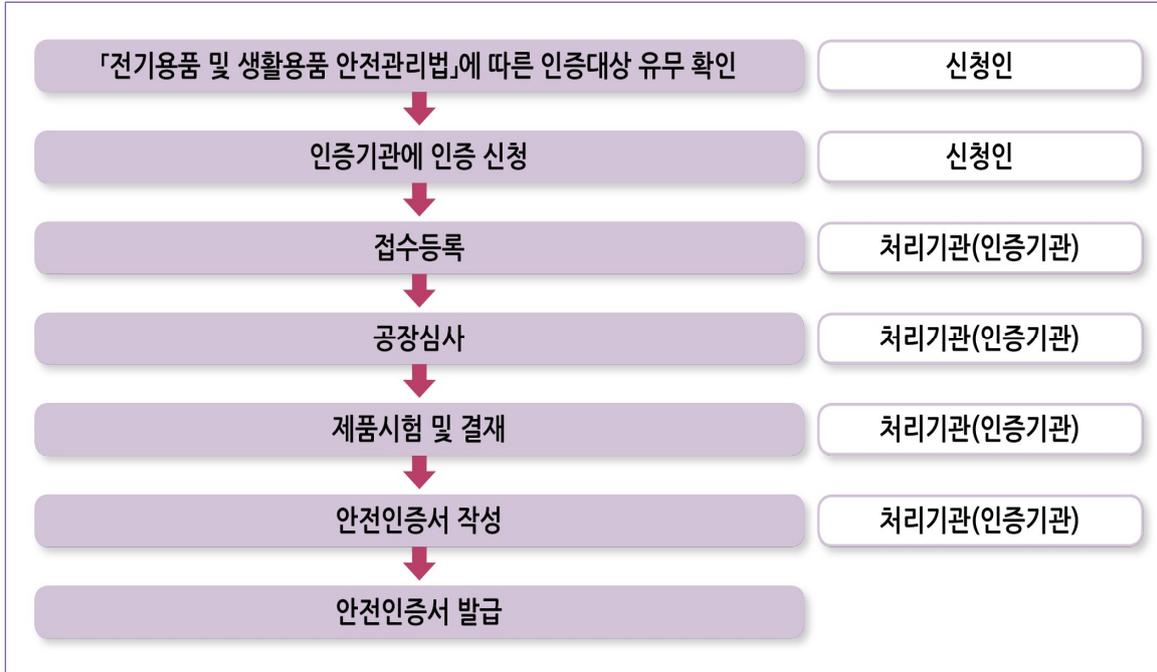
신청 절차 및 서류



1. 안전인증 신청 기관

전기용품	생활용품	대표 연락처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80-808-0114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0
-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000

2. 처리절차



3. 신청서류(해당 인증기관 홈페이지 참조)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수료(신청시에 납부하여야하며, 시험료는 제품 및 모델에 따라 상이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p>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p>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함)
2. 안전인증, 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	<p>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나) 생활용품: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용품: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 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p>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p>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p>
3.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신고 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p>가. 안전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신청 매뉴얼

구분	수수료
	나.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4.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함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비고

-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2호가목2)나)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기본료: 시험 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 나. 인건비: 시험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 바.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 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시험기관에서 시험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되는 항목을 하나로 보아 산정한다.

4. 공장심사

○ 초기공장심사(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고자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초기공장심사 내용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 확인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정기공장심사(인증취득 후 2년 1회 실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2년에 1회 실시

정기공장심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준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5.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안전인증을 받은 변경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제품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	품목
가.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바.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사. 전기기기	1) 전기청소기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 주방용전열기구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5) 모발관리기 6)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분류	품목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電動機器)
	8) 전기액체가열기기
	9)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0)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11) 전기온수기
	12) 전기 냉장·냉동기기
	1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충전기
	1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열기구
	17) 전기마사지기
	18) 냉방기
	19)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0) 전기가열기기
	21)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22) 전기욕조
	23) 팬, 레인지 후드
	24) 화장실용 전기기기
	25) 가습기
	26) 그 밖에 가목부터 커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분류	품목
아.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고)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1)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가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카.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램프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분류	품목
가.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나. 생활	1) 가스라이터 2) 물놀이기구 3) 비비탄 총
다. 기계금속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조속기(調速機), 비상 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 문 잠금장치 및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만 해당된다] 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라. 섬유	대상 없음
마. 건축	대상 없음



KPSA 한국제품안전협회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